

어촌계설립인가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| | | | |
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
| 접수번호 | 접수일 | 처리기간 | 30일 |
| 신청인 | 성 명(대표자) | 생년월일 | |
| | 주 소 | 전화번호 | |
| 신청내용 | 어촌계 명칭 | 업무구역 | |
| | 주사무소 소재지 | | |
| | 발기인 수(명) | 어촌계 설립동의자 수(명) | |
| 변경사유 | | | |

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1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어촌계의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| | | |
|------|---|------------|
| 첨부서류 | 1. 정관 1부 2. 창립총회 의사록 1부 3.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4. 임원 및 어촌계원 명부 1부 5. 구역 및 어장 약도 1부 | 수수료 없 음 |
|------|---|------------|

유의사항

- 어촌계를 설립하려는 경우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.
- 정관, 사업계획, 수지예산 및 그 밖에 어촌계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

신청인

처 리 기 관: 특별자치도 · 시 · 군 · 구